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92 발의연월일: 2022. 8. 31.

발 의 자: 박성중·강기윤·하영제

이종배 • 배준영 • 홍석준

윤한홍 • 태영호 • 양금희

서일준 · 허은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자체 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 을 권고하는데 그쳐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기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 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실시한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 등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 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 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 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에 따 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실시한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 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 등 개선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 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④</u> 제	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
정에	따른 소	프트웨	어사업	형 영
향평기	나 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	통령령	으로
정한디	ŀ.			

<u>5</u>	 - <u>제4항까</u> ス]의